

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(제14조 관련)

구분	지정요건
시설 기준	가.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.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나.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
교수 자격 및 인원	가. 교수요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. 교육기관당 가목의 요건을 갖춘 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